

## EC농업의 현황과 공동농업정책(CAP)의 흐름

강 봉 순

이 논문은 EC 농업의 특성, 농업구조, 농산물 수급, 농산물 교역 등에 관한 현상 파악을 통해 EC 농업의 개요를 설명한 후, 오늘날의 이러한 EC농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공동농업정책의 흐름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우선 공동농업정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한 다음에 공동농업정책의 가시적인 성과와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점을 정리하였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내지는 완화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앞으로의 개혁움직임을 전망해 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EC농업의 진입이 새로운 농업시장을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 농정에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려고 하였다.

### I. 머리말

제2차 세계대전 직후만 하더라도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이었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라는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공동농업정책(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이라는 보호주의 농업정책을 실시하면서부터 식량자급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최근에는 대부분의 주종 농산물을 자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의 수출점유율을 점차 늘려가는 국가들로 변모하였다.

그러나 농산물의 재고누증과 이에 따른 EC재정의 압박으로 공동농업정책의 부분적인 수정은 불가피해졌고, EC의 보호주의 농업정책에 대한 농산물수출국의 맹렬한 비난과 번번한 무역마찰 속에서 우루과이 라운드(UR: Uruguay Round) 협상에 임하였지만 아직도 보호의 벽을 허물지 않은 채, 지난 연말에 Dunkel사무총장이 제시한 협상초안마저 EC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을 뒤흔든다는 판단에 따라 상당한 수정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동농업정책이 대내외적인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농업보호주의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고,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떤 형태로 대응해 왔으며, 앞으로의 개편움직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방향설정에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C 농업의 개황을 소개하고, 공동농업정책의 내용과 앞으로의 개혁방향을 파악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정방향의 설정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II. EC 農業의 概要

### 1. EC 農業의 特性

EC 농업의 두드러진 특징은 각 회원국간의 다양한 기후와 토질로 인해 다양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C는 지중해 연안국인 그리스, 이태리에서부터 유럽 북부의 덴마크까지 포함하는 12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기후대를 가지고 있으며, 토질에 있어서도 비교적 비옥한 중부유럽지역과 그리스나 이태리 남부지역과 같은 척박한 지역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품목에 있어서도 낙농, 축산, 곡물류, 채소류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과실류, 식물성 유지류, 담배, 면화 등 지구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거의 망라하고 있고, 일부 열대과일류로부터 한대지역 농산물까지 매우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농산물과 각 회원국의 주종 농산물 차이로 공동농업정책은 복잡해질 수 밖에 없고, 회원국간의 이해관계가 심해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농업구조에 있어서도 대체로 규모가 영세한 편이지만 회원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한 국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농업구조가 현격하게 다르다. EC의 호당평균 경지 면적은 13.3ha로서 호주나 미국 등의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 비해 극히 협소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영국, 덴마크, 룩셈부르크, 프랑스 등은 호당 경지면적이 비교적 넓은 편이다. 반면에 그리스, 포르투갈, 이태리 등은 5 ha 내외로 매우 협소하다. 한 국가내에서도 이태리나 프랑스 등은 대농과 소농의 혼재 현상이 두드러져 농정의 선택에 따른 이해집단의 갈등이 심한 편이다. 경제발전의 정도나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도 회원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공동농업정책의 수행에 같은 목소리를 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 2. 農業構造

#### (1) 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農業의 位置

EC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GDP상 농업의 비중은 3.0%에 불과하고, 총고정자본형성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4%에 지나지 않으며, 농업부문 취업자수는 총취업자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거래에 있어서의 농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이 8.7% 그리고 수입이 12.9%에 이르고 있다.

이것도 각회원국의 경제발전이나 농업여건상의 차이로 말미암아 회원국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의 비중이 GDP나 총고정자본형성 그리고 취업자수에 있어서는 선진국인 서독, 영국, 프랑스, 벨지움, 룩셈부르크 등이 매우 낮고, 상대적 후진국에 속하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수출에 있어

서는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첨단기술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네델란드나 덴마크의 농업부문 비중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밖에 제조업부문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고 선진국이면서도 농업여건이 좋은 프랑스 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총수입액 가운데 농산물수입액의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포르투갈이고, 가장 낮은 나라는 농업국인 아일랜드이며, 이 밖에 다른 나라들은 모두 10-20% 수준이다.

(표 1) EC 경제에서 차지하는 농업부문의 비중(%)

구 分		GDP 비 중 <sup>1)</sup>	총고정자본 형성비중 <sup>1)</sup>	취업자수 비 중 <sup>2)</sup>	수 출 비 중 <sup>2)</sup>	수 입 비 중 <sup>2)</sup>
E	C	전 체	3.0	4.4	7.0	8.7
벨	지	워	2.2	1.9	2.8	4.7
덴	마	크	3.8	3.5	6.0	25.0
독	일		1.6	2.2	3.0	3.9
그	리	스	16.4	6.6	26.6 <sup>3)</sup>	26.0
스	페	인	5.1	3.9	13.0	16.2
프	랑	스	3.2	2.4	6.4	12.7
아	일	랜 드	10.9	11.1	15.1	26.4
이	태	리	4.1	7.5	9.3	5.6
룩	셈	부 르 크	2.3	3.1	3.4	4.7
네	델	란 드	4.2	5.4	4.7	23.9
포	르	투 갈	5.2	3.5	18.9	12.9
영	국		1.4	1.2	2.2	6.5

주:1) 1988년 통계치, 2)1989년 통계치

자료: Commission of the EC, 1991

## (2) 農業經營規模

EC 역내의 총면적은 2,258천 km<sup>2</sup>이고, 이 가운데 농경지가 1,273.1천 km<sup>2</sup>로 전체의 56.3%에 이르고 있다. 평야지가 많은 아일랜드(81.1%), 영국(73.9%), 덴마크(65.2%) 등이 국토면적에 대한 농경지 비율이 높고, 산악지대에 속하는 그리스(43.5%), 벨지움(44.7%) 등도 우리나라(21.4%)보다는 월등히 높은 편이다.

호당 경지면적은 EC 전체로는 13.3ha이지만 회원국간에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영국(64.4ha), 덴마크(32.2ha), 룩셈부르크(30.2ha), 프랑스(28.6ha) 등은 비교적 규모가 크지만, 그리스(4.0ha), 포르투갈(5.2ha), 이태리(5.6ha) 등은 매우 영세하다.

국민 1인당 경지규모는 아일랜드(1.62ha)가 가장 크고, 스페인(0.70ha), 덴마크(0.57ha), 그리스(0.57ha) 등이 비교적 큰 편이며, 네델란드(0.13ha), 벨지움(0.14ha), 독일(0.19ha) 등이 매우 작다.

〈표 2〉 EC의 회원국별 경지면적(1989)

구 분	국토면적	경지면적	B/A	호 당 경지면적	인구 1인당 경지면적
	km <sup>2</sup> (A)	km <sup>2</sup> (B)	%	ha	ha
E C 전 체	2,258,271	1,273,200	56.3	13.3	0.39
벨 지 움	30,518	13,630	44.7	14.8	0.14
덴 마 크	43,092	28,090	65.2	32.2	0.57
독 일	248,693	118,850	47.8	16.8	0.19
그 리 스	131,957	57,410	43.5	4.0	0.57
스 페 인	504,765	271,100	53.7	13.8	0.70
프 랑 스	549,086	307,100	55.9	28.6	0.54
아 일 랜 드	70,283	56,970	81.1	22.7	1.62
이 태 리	301,281	172,970	57.4	5.6	0.30
룩 셈 부 르 크	2,586	1,260	48.7	30.2	0.33
네 텔 란 드	39,800	20,190	50.7	15.3	0.13
포 르 투 갈	92,071	45,320	49.2	5.2	0.44
영 국	244,139	180,310	73.9	14.4	0.32

자료 : Commission of the EC, 1991

한편, 경지규모별 농가분포는 〈표 3〉에서 보듯이 1-5ha의 영세농이 EC 전체 농가의 약 절반에 해당하는 49.2%를 차지하고 있고, 50ha 이상의 대농은 전체의 6.8%인 473천호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5%의 대농이 경작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전체의 4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49.2%의 영세농이 경작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전체의 7.1%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경지규모별 농가분포도 각 회원국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영국은 10ha 미만의 소농이 25.9%에 불과하고, 50ha 이상을 경작하는 대농이 33.4%로 더 많으며, 20-50ha를 경작하는 농가도 25.4%나 되어 대농이 중심이 되어 있다. 더구나 경지면적으로 보면 10ha 미만의 소농이 경작하는 경지면적은 전체의 1.8%에 불과하고, 50ha 이상의 대농이 경작하는 경지가 전체의 82.2%를 차지할 정도로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20-50ha를 경작하는 농가가 32.8%로 가장 많고, 5ha 미만의 영세농과 50ha 이상의 대농의 비중도 각각 18.2% 및 18.1%로 비슷하여 대소농의 혼재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이다. 그러나 경지면적으로는 50ha 이상의 대농이 전체의 52.1%를 경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농규모인 20-50ha의 농가도 전체의 34.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10ha 이하의 소농이 경작하고 있는 면적은 전체의 4.3%에 지나지 않는다.

독일은 50ha 이상의 대농이 6.1%에 불과하고, 5ha 미만의 소농이 29.4%로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지만 20ha-50ha의 중농도 24.8%나 되어 비교적 중소농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20-50ha 중농이 전체 경지면적의 43.3%를 경작하고 있고, 50ha 이상의 대농이

〈표 3〉 EC 주요국의 영농규모별 농가 및 경지분포(1989년)

구 분		농 가 수		면 적	
		(천호)	구성비 (%)	(천 ha)	구성비 (%)
단 위	(ha)				
EC 전체	계	6,929	100.0	114,562	100.0
	1- 5	3,412	49.2	8,080	7.1
	5-10	1,163	16.8	8,116	7.1
	10-20	936	13.5	13,237	11.5
	20-50	946	13.7	29,505	25.7
	50이상	473	6.8	55,624	48.6
프랑스	계	911.8	100.0	28,024	100.0
	1- 5	166.0	18.2	432	1.5
	5-10	107.2	11.7	785	2.8
	10-20	174.7	19.1	2,562	9.1
	20-50	299.2	32.8	9,632	34.4
	50이상	164.7	18.1	14,613	52.1
독일	계	670.7	100.0	11,826	100.0
	1- 5	196.9	29.4	507	4.3
	5-10	118.4	17.6	864	7.3
	10-20	148.5	22.1	2,163	18.3
	20-50	166.2	24.8	5,117	43.3
	50이상	40.7	6.1	3,175	26.8
이태리	계	1,974.0	100.0	15,141	100.0
	1- 5	1,340.1	67.9	3,045	20.1
	5-10	333.0	16.9	2,277	15.0
	10-20	171.3	8.7	2,339	15.4
	20-50	91.6	4.6	2,715	17.9
	50이상	38.0	1.9	4,765	31.5
영국	계	242.9	100.0	16,746	100.0
	1- 5	32.8	13.5	88	0.5
	5-10	30.2	12.4	221	1.3
	10-20	37.1	15.3	536	3.2
	20-50	61.8	25.4	2,038	12.2
	50이상	81.0	33.4	13,863	82.8

자료 : EC 통계국

경작하는 면적도 전체의 26.8%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때, 대부분의 농업생산은 중대농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이태리는 5ha 미만의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67.9%를 차지하고 있고, 5ha-10ha의 중소농도 16.9%를 점하고 있어 소농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반면에 50ha 이상의 대농은 전체의 1.9%에 불과한 38천호에 불과하다. 그러나 경지면적은 영세농에서 대농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 (3) 農業構造의 變化

1985-1988년의 3개년 동안 EC의 총농업인구는 3.0%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국가별로는 네델란드(4.6%)가 증가하고 있을 뿐이고 스페인(-4.8%), 이태리(-3.9%), 독일(-3.6%), 프랑스(-3.3%) 등은 비교적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그 밖의 나라들도 2-3% 내외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다.

경지면적은 영국(0.9)이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벨기에(0.7%), 프랑스(0.5%), 이태리(0.5%) 등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노동생산성은 연간 3.9%씩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토지생산성은 연간 1.1%의 성장에 그치고 있다. 국가별로는 생산성이 비교적 낮았던 스페인(6.4%), 이태리(5.9%), 포르투갈(5.0%) 등의 노동생산성 증가가 뚜렷하고, 토지생산성에서는 벨지움(2.9%), 이태리(2.3%) 등이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표4〉 최근 EC농업구조 관련지표의 변화 추이(1985/1988)

단위 : %

E C 전 체	농업인구	경지면적	노동생산성	토지생산성
	△ 3.0	△ 0.3	3.9	1.1
벨 지 움	△ 2.1	△ 0.7	4.4	2.9
덴 마 크	△ 3.1	△ 0.3	3.8	0.9
독 일	△ 3.6	△ 0.3	4.5	1.0
그 리 스	△ 1.8	0.0	3.2	1.3
스 페 인	△ 4.8	△ 0.1	6.4	1.4
프 랑 스	△ 3.3	△ 0.5	4.9	1.9
아 일 랜 드	△ 1.3	△ 0.1	1.9	0.7
이 태 리	△ 3.9	△ 0.5	5.9	2.3
룩 셈 부 르 크	△ 1.9	△ 0.3	1.7	0.1
네 덴 란 드	4.6	△ 0.2	4.3	1.9
풀 투 갈	△ 3.1	0.0	5.0	1.7
영 국	△ 1.6	△ 0.9	1.4	0.7

자료 : EC 통계국

### 3. 農產物 積給

#### (1) 農產物 生產

##### 1) 農業生產額의 會員國別 比重

EC의 농업부문 GDP에서 각 회원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프랑스(26.3%), 이태리(20.9%), 독일(16.4%), 스페인(12.7%), 영국(10.9%) 등이 높은 편에 속하며, 이들 5개국이 EC 농업생산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표 5> 참조).

품목별로 보면 곡물류는 프랑스(42.0%)가 대부분을 점하고 있고, 이밖에 영국(16.0%), 이태리(15.2%), 스페인(15.1%), 독일(12.4%) 등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이 3% 내외의 매우 낮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축산물의 경우도 프랑스(23.2%), 독일(20.4%), 이태리(15.2%), 영국(12.2%), 스페인(10.5%) 등의 순으로 이들 5개국의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네델란드(10.3%)도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쇠고기는 프랑스(28.5%)가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이밖에 독일(20.0%), 이태리(15.2%), 영국(12.8%) 등이 비교적 많이 생산하는 국가들이다. 우유제품은 독일(23.7%)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프랑스(22.1%), 이태리(13.0%), 영국(12.8%)에 이어 네델란드가 11.6%로 비교적 큰 생산국가이다. 돼지고기도 독일(25.8%)이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 프랑스(15.9%)에 이어 네델란드가 15.0%나 생산하고 있으며, 덴마크도 10.6%나 차지하고 있다.

##### 2) 農業生產額의 品目別 比重

EC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운데 금액으로 환산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낙농제품으로 농산물 총생산액의 18.5%를 점하고 있고, 다음은 쇠고기(13.5%), 돼지고기(10.7%)의 순으로 축산물이 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밖에 채소류(7.8%), 소맥(6.6%), 포도주(6.0%), 가금육(4.3%), 과실류(4.2%), 계란(3.1%), 사탕무우(2.4%), 보리(2.2%) 등이 EC에서 생산되는 주요작목으로 꼽힌다.

한편, 회원국별 주생산품목도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비슷하지만 품목별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들어 살펴보면 벨지움은 돼지고기 생산 비중이 28.9%로 매우 높으며, 덴마크는 주로 돼지고기(26.7%)와 우유 및 낙농제품(23.8%)에 특화를 이루고 있다. EC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에서는 포도주(22.7%), 낙농제품(15.5%), 쇠고기(14.6%), 소맥(10.6%) 등을 주산물로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와는 달리 축산물이 아닌 포도주의 비중이 특히 높다. 그리고 독일은 낙농제품(26.7%), 돼지고기(16.7%), 쇠고기(16.1%) 등의 축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영국은 우유 및 낙농제품(21.8%), 쇠고기(15.1%) 등의 축산물과 더불어 소맥(11.0%)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한편, 이태리는 자연조건이 유리한 채소류(14.2%)와 과실류(7.9%)의 비중이 높고, 스페인의 경우도 채소류(12.5%)와 과실류(6.2%)가 상대적

〈표 5〉 농업생산액의 회원국별 비중(1989년)

단위 : %

구 분	농업 GDP	곡물	cereals	축산물	쇠고기	우유제품	돼지고기
E C 전 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벨 지 움	3.5	2.5	1.6	4.4	4.9	3.1	7.6
덴 마 크	3.9	2.8	5.1	4.9	2.7	5.0	10.6
독 일	16.4	12.0	12.4	20.4	20.0	23.7	25.8
그 리 스	4.5	6.7	3.7	2.7	1.2	2.3	1.5
스 페 인	12.7	16.3	15.1	10.5	5.9	5.6	13.1
프 랑 스	26.3	30.2	42.0	23.2	28.5	22.1	15.9
아 일 랜 드	2.5	0.6	1.1	4.1	6.6	4.7	1.2
이 태 리	20.9	27.0	15.2	15.2	15.2	13.0	11.6
룩 셈 부 르 크	0.1	0.0	0.0	0.2	0.2	0.3	0.0
네 델 란 드	8.9	7.4	1.1	10.3	7.3	11.6	15.0
포 르 투 칼	2.0	2.0	1.7	2.0	1.5	1.3	2.5
영 국	10.9	8.8	16.0	12.7	12.2	12.8	8.4

자료 : EC 통계국

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쇠고기(36.0%)와 낙농제품(35.4%)에, 그리고 룩셈부르크는 낙농제품(46.7%)에 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델란드는 우유 및 낙농제품(24.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화훼류(18.6%)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이다. 올리브유는 스페인(5.0%)과 이태리(3.8%)에서 그리고 양고기는 영국(4.7%)에서 비교적 많이 생산되고 있다.

## (2) 主要 農產物 1人當 消費量

EC 회원국 국민들의 주식은 〈표 7〉에서 보듯이 곡물류 중에서는 소麦(73Kg)이, 육류 가운데에서는 주로 돼지고기(40Kg), 쇠고기(20Kg), 가금육(18Kg) 등이다. 이밖에 우유 및 낙농제품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식품 가운데 하나이며, 채소류(117Kg)와 과실류(61Kg)도 즐겨 먹는 식품으로 꼽힌다.

EC연내의 주요 농산물 일인당 소비량 추이를 보면 대체로 정체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곡물류에 있어서는 1968/1969년에 일인당 소비량이 85Kg이던 것이 1988/1989년에는 84Kg으로 약간의 감소를 보였는데, 소비량이 극히 미미한 쌀과 옥수수만 약간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육류의 경우도 1968/1969년에 비해서는 많이 증가하였으나 최근 1985년에서 1989년 사이에는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쇠고기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과실류는 1968/1969년에 비해서는 감소 했지만 최근에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채소류 소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룩셈부르크, 그리스, 스페인에서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표 6) 농업생산액의 품목별 비중(1989)

품목	EC 전체	밸지음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	룩셈	비엘란드	포르투갈	영국	단위 : %	
														EC농업의 혼합과 국토농업정책	
우유 및 낙농제품	18.5	16.7	23.8	26.7	9.4	7.9	14.6	35.4	11.5	46.7	24.1	12.1	21.8		
쇠고기	13.5	19.1	9.4	16.1	3.6	6.8	14.6	36.0	9.8	25.2	11.0	10.3	15.1		
폐자고기	10.7	28.9	26.7	16.7	3.5	11.9	6.4	5.2	5.9	8.1	17.9	13.2	8.2		
소류	7.8	10.5	-	2.3	11.5	12.5	5.7	-	14.2	-	10.5	5.5	7.4		
소고기	6.6	3.6	-	4.4	5.4	3.8	10.6	-	4.7	2.1	-	5.0	11.0		
포도주	6.0	-	-	4.0	2.3	-	22.7	-	7.5	10.1	-	9.0	-		
가금육	4.3	3.4	-	-	2.3	4.6	5.2	2.7	5.4	-	3.4	6.5	6.3		
과실류	4.2	3.8	-	-	8.0	6.2	3.3	-	7.9	-	-	4.6	-		
계란	3.1	2.5	-	2.9	2.3	3.3	-	-	2.5	-	3.2	3.7	3.7		
사탕수수	2.4	3.9	2.1	3.7	-	-	2.5	-	-	-	2.5	-	-		
보리	2.2	-	6.6	2.7	-	3.1	-	3.3	3.7	2.1	-	-	5.1		
Oilseeds	2.1	-	-	2.0	-	-	4.0	-	-	-	-	-	-		
감자	2.0	3.2	-	-	-	3.2	-	-	-	-	-	-	3.7	3.7	
육수수	2.0	-	-	-	3.1	-	4.5	-	-	-	-	-	-	-	
양고기	1.7	-	-	-	-	-	-	-	-	-	-	-	4.7		
울리브유	-	-	-	-	-	-	5.0	-	-	3.8	-	-	-	-	
화훼류	-	-	-	-	-	-	-	-	-	-	18.6	-	-	-	

자료 : EC 통계국

〈표 7〉 EC의 주요농산물 1인당 소비량 추이

단위 : kg/인

구 분	1968/1969 <sup>1)</sup>	1975/1976 <sup>1)</sup>	1985/1986 <sup>1)</sup>	1988/1989
곡 물 류 계	85	81	83	84
소 맥	76	74	72	73
옥 수 수	-	3	7	7
미 곡	-	3	4	4
채 소 류	99	97	116	117
과 실 류	65	59	60	61
우 유	103	102	-	-
치 즈	9	11	-	-
버 터	6	5	-	-
육 류 계	68	77	82	87
쇠 고 기	25	25	23	20
돈 육	28	33	37	40
가 금 육	9	12	16	18
양 고 기	3	3	4	4

주 : 1) 3개년 이동평균치임

자료 : Commission of the EC, 1991

이와 같이 EC의 농산물소비 증가는 최근 들어 극히 미미하거나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에 인구증가마저 정체현상을 보임에 따라 소비의 신장이 생산의 증가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일부 사료작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농산물은 자급단계를 넘어 오히려 과잉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 (3) 農產物 自給率

EC의 1989년 현재 각 농산물의 자급도가 높은 품목은 버터(134%), 설탕(124%), 소맥(123%) 등이고, 자급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품목은 옥수수(95%), 미곡(75%), 양고기(83%), 신선파일(84%) 등이다(〈표 8〉 참조).

곡물류의 경우 자급도가 1960년대 말의 86% 수준에서 1980년대 말에는 113%로 크게 향상되었다. 소맥과 대맥 그리고 보리는 자급도가 최근에 각각 123%, 118%, 및 118%로 자급수준인 100%를 상회하고 있다. 반면에 곡물류 중에서 옥수수와 쌀은 1989년 현재 자급도가 각각 95% 및 75%로 여전히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 그러나 옥수수의 자급도는 1969년의 2배가 넘을 정도로 많이 향상되었다.

육류의 자급도는 1989년 현재 102%인데, 품목별로는 쇠고기가 1969년의 90%에서 1989년에는 104%로 향상되었으며, 돼지고기와 가금육은 큰 변화없이 계속 자급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8〉 주요 농산물에 대한 EC의 자급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68/1969	1975/1976	1980/1981	1985/1986	1988/1989
곡 품 류 계 <sup>1)</sup>	86	88	97	110	113
소 맥	94	106	114	124	123
대 맥	100	96	116	119	118
옥 수 수	45	49	58	77	95
미 곡	-	76	77	68	75
설 탕	82	98	124	123	124
신 선 채 소	98	94	102	107	106
신 선 과 일	80	79	88	87	84
치 즈	98	103	-	-	107 <sup>2)</sup>
버 터	91	104	-	-	134 <sup>2)</sup>
쇠 고 기	90	99	102	107	104
돼 지 고 기	100	99	101	102	103
가 금 육	101	104	107	105	105
양 고 기	56	64	74	80	83

주 : 1) 미곡제외, 2) 1987/1988 자료

자료 : Commission of the EC, 1991.

〈표 9〉 주요 농산물의 회원국별 자급도 (1989)

단위 : %

	cereals				쌀	설탕	육류		치즈	버터	탈지분유	
	소 맥	보리	옥수수				쇠고기	돼지고기				
EC 전체	113	124	118	95	76	124	102	104	103	-	-	
벨지움	56	74	90	5	0	225	137	149	167	41	86	183
덴마크	136	132	141	0	0	261	295	249	346	400	168	44
독일	106	116	112	58	0	132	87	112	85	95	77	326
그리스	108	120	86	106	152	64	74	39	74	90	69	0
스페인	113	119	128	81	115	120	98	96	98	88	154	85
프랑스	221	249	213	212	17	217	101	118	84	113	107	122
아일랜드	95	59	125	0	0	150	280	776	114	500	479	909
이태리	78	74	62	90	290	97	73	59	67	77	57	0
네덜란드	27	41	31	0	0	176	236	169	278	253	101	38
포르투갈	46	35	28	51	64	0	91	82	90	94	100	90
영국	107	102	145	0	0	57	81	76	72	72	49	102

자료 : EC 통계국

설탕과 낙농제품인 버터의 자급율은 1989년 현재 각각 124% 및 134%를 보이고 있을 정도로 생산이 과잉되어 생산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과채류는 열대과실류만 일부 수입할 뿐 거의 자급수준에 와 있다.

한편, 회원국별로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프랑스가 가장 자급도가 높은 나라로서 곡물류는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자급도가 200%를 넘고 있으며, 육류 및 축산물도 돼지고기를 제외한 다른 품목들은 대체로 자급을 이루고 있다. 덴마크는 옥수수와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높은 자급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벨지움, 아일랜드, 네델란드 등은 육류 및 축산물에서 높은 자급도를 보이고 있으나 곡물의 자급도는 매우 낮은 편이다. 반면에, 그리스와 영국은 주요 곡물류에서는 자급을 이루고 있으나 육류 및 축산물의 자급도가 낮은 편이며, 전체적으로 자급도가 낮은 나라는 이태리와 포르투갈로 각각 쌀과 버터를 제외한 주요 품목에서 매우 낮은 자급도를 유지하고 있다.

#### 4. 農產物 交易

EC의 총수출액은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9년 현재 4,550억달러로 1985년의 2,890억달러에 비해 57.4%가 증가하였는데, 농산물 수출액도 1989년 현재 397억달러로 1985년의 261억달러에 비해 52.1%가 늘어나 농산물의 수출도 전체수출과 비슷하게 신

〈표 10〉 농산물 교역 총괄

단위 : 10억 US \$

	1982	1985	1987	1988	1989
○ 세계무역 총액(A)	1,513.2	1,580.0	1,966.0	2,237.7	2,405.6
- 증가추이('85기준)	95.8	100.0	124.4	141.6	152.3
○ 농산물 무역액(B)	220.8	216.7	256.9	298.9	315.4
- 증가추이('85기준)	101.9	100.0	118.6	137.9	145.5
B / A (%)	14.6	13.7	13.1	13.4	13.1
○ EC 수출 총액(C)	278.8	289.0	391.7	429.0	455.0
- 증가추이('85기준)	96.5	100.0	135.5	148.4	157.4
○ EC 농산물 수출액(D)	26.4	26.1	32.8	36.0	39.7
- 증가추이('85기준)	101.1	100.0	125.7	137.9	152.1
D / C (%)	9.5	9.0	8.4	8.4	8.7
○ EC 수입 총액(E)	327.6	310.1	392.6	458.2	492.2
- 증가추이('85기준)	105.6	100.0	126.6	147.8	158.7
○ EC 농산물 수입액(F)	50.3	46.7	58.7	64.6	63.5
- 증가추이('85기준)	107.7	100.0	125.7	138.3	136.0
F / E (%)	15.4	15.1	15.0	14.1	12.9

자료 : EC 통계국

장하여 왔다. 따라서 총수출액중에서 농산물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9% 안팎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EC의 총수입액은 1989년 현재 4,922억달러로 1985년의 3,101억달러에 비해 58.7%나 증가하였으나 농산물 수입액은 1989년에 635억달러로 같은 기간동안 36.0% 증가에 그치고 있다. 총수입액 중 농산물수입액의 비중도 최근 많이 감소하여 1989년 현재 12.9%를 보이고 있다. 한편 EC의 농산물 무역적자액은 1982년의 23.9달러에서 1988년에는 28.2억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1989년 현재는 23.8억달러로 다시 감소하였다.

한편, EC의 농산물수입은 1988년에 646억달러에 이르러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동시에 농산물수출도 360억달러로 미국(466억 \$)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육류(32억달러)와 낙농제품 및 계란(42억달러)의 수출액은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과채류(33억달러)도 미국(35억달러)과 근소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곡물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종 농산물에서 농산물수출대국이 되어 있는 셈이다(〈표 11〉 참조).

EC의 주요 농산물별 세계시장 점유현황을 보면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포도주로서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시장점유율이 70.4%로 세계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 버터(46.4%), 치즈(34.3%), 분유(45.5%) 등의 낙농제품도 순시장점유율이 29.6%로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입장에 있으며, 이밖에도 쇠고기(20.1%), 돼지고기(20.2%), 계란(19.4%) 등이 비교적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대두(-48.1%)와 옥수수(-4.5%)는 순시장점유율이 음의 값을 가지지만 절대치가 크기 때문에 수입에 있어서 큰 고객임을 알 수 있다.

〈표 11〉 주요국의 농산물 무역현황(1988)

단위 : 백만 US\$

		전체	농산물			
수출	국가		cereals	육류	낙농제품 및 계란	과채류
EU	EC	428,990	35,982	4,331	3,170	4,183
미국		309,600	46,608	12,234	2,430	476
캐나다		113,145	16,234	4,261	793	173
호주		31,866	11,031	1,576	1,892	406
뉴질랜드		8,547	5,700	28	1,366	1,046
EU	EC	458,234	64,605	1,612	2,859	829
미국		460,280	33,808	781	3,004	440
캐나다		106,778	7,311	324	519	132
호주		33,239	1,942	64	19	69
뉴질랜드		7,305	630	61	9	4

자료 : EC 통계국

〈표 12〉 EC의 주요 농산물 시장 점유현황(1987)

단위 : 천 M/T, %

	세 계 생산량 (A)	세 계 무역량 (B)	B/A	EC의 무역 비중		
				EC수입	EC수출	순EC시장점유율
Cereals	1,329,676	182,356	13.7	3.5	12.7	9.2
- 소 맥	521,271	96,838	18.6	2.5	16.0	13.5
- 옥수수	449,518	56,024	12.5	5.9	1.3	△ 4.5
대 두	95,618	27,437	28.7	48.1	0.0	△ 48.1
포도주	30,272	1,675	5.5	10.0	80.4	70.4
설탕	114,434	27,056	23.6	6.8	18.4	11.6
우유제품	465,105	639	0.1	0.9	30.5	29.6
- 버터	7,633	906	11.9	8.8	55.2	46.4
- 치즈	13,791	831	6.0	13.4	47.7	34.3
- 분유	6,346	2,095	33.0	0.9	46.4	45.5
육류	159,956	6,200	3.9	11.1	21.6	10.5
- 쇠고기	49,613	2,685	5.4	7.8	27.9	20.1
- 돼지고기	62,644	1,019	1.6	5.2	21.2	16.0
- 가금육	35,380	1,449	4.1	4.6	24.6	20.2
계란	34,410	359	1.0	5.9	25.3	19.4

자료 : FAO, Trade Yearbook, 1990

### III. EC 共同農業政策(CAP: 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推進

#### 1. EC(歐洲共同體) 概況

##### (1) 設立 및 發展過程

유럽의 결속과 평화기반을 정착시키고, 유럽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며, 나아가 유럽통합의 초석을 만들기 위해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의 생산 및 판매를 공동관리하자는 Schuman 선언(1950.5)이 있은 후, 이듬해인 1951년 4월의 파리조약에 의해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가 탄생되었다. 그 이후 유럽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과 원자력의 공동개발과 공동이용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유럽경제공동체(EEC: European Economic Community)와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를 탄생시킨 로마조약이 1957년 3월에 체결됨으로써 1958년 1월에 EEC의 정식발족을 보게 되었다. EEC의 발족 당시 회원국은 프랑스, 독일, 이태리, 베네룩스 3국 등 6개국이었다. 1967년 7월 1일부터는 그 동안 독립

기구로 운영되어온 유럽 석탄 및 철강공동체(ECSC),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등의 3개기구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를 단일화시켜 유럽공동체(EC: European Community)를 형성하게 되었고, 1973년 1월에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가, 1981년 12월에는 그리스, 그리고 1986년 1월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현재 EC의 회원국은 12개국이며 1990년 10월 통독에 따라 과거 동독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 (2) EC의 主要 執行機構

EC를 구성하는 주요 집행기구로는 집행위원회(Commission), 각료이사회(Council),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그리고 법원(Court of Justice) 등이 있다.

집행위원회는 법규를 제정하고, 정책을 제안·집행하며, 대외협상시 EC를 대표하고, 집행위의 규칙 및 지침 등을 제정하는 기구로, 17명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을 두고 있고, 사무국 및 23개의 총국(Directorate General)을 두고 있다.

EC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입법권, 예산심의 확정권, 협상체결권을 가지는 각료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담당 각료들로 구성되며, 분야에 따라 농업 이사회, 재무이사회 등으로 불리며, 의장은 순번에 따라 6개월마다 교체한다. 그리고 보조기관으로서 회원국 상주대표회의, 113위원회, 사무국 등이 있다.

유럽의회는 직접보통선거에 의해 선출된 51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고, 18개의 상임위원회와 사무국 및 의원친선협회 등을 가지고 있는데, 입법기관은 아니며 단지 감독 및 자문기관의 성격을 갖는다.

이밖에 EC 회원국 정부수반 및 외상, EC 집행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되는 유럽이사회가 있고, EC의 조약 및 법규의 해석과 분쟁을 해결하는 법원이 있는데 13명의 법관과 6명의 심의관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6년이다.

### (3) EC 豫算概要

EC예산은 각 회원국의 부가가치세(VAT)의 일정 비율(1.4%)에 해당하는 조세수입, 모든 역외 수입품에 대한 관세수입, 각 회원국 GNP 규모에 따른 기여금, 농산물 수입 부과금, 그리고 설탕의 생산 및 수입에 따른 부과금 등을 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된 EC 예산의 세출구성은 <표 13>에서 보듯이 총 48,775백만 ECU 중에서 54.2%인 26,452 백만 ECU가 농산물 가격 등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고, 구조조정에 23.6%(농업구조조정 1,700백만 ECU), 연구개발비로 10.4%, 행정비 및 유보금으로 각각 9.7% 및 2.1%가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출면에서 볼 때 EC예산의 절반 이상이 농업부문에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EC세출예산의 구성(1990년)

단위 : 백만 ECU(%)

총 액	가격보장 부 문	구 조 조 정 부 문				연구개발등	행정비등	유보금
			농업	지역 개발	사회 개발			
48,775 (100.0)	26,452 (54.2)	11,532 (23.6)	1,700	5,408	4,075	5,076 (10.4)	4,715 (9.7)	1,000 (2.1)

자료: EC 집행위원회

## 2. 共同農業政策의 實施背景과 農政目標

1950년 5월의 Schuman선언이 있은 후, 유럽의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경제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모든 잡정 가입국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EEC를 탄생시킨 1957년 3월의 로마조약이 체결되기까지는 거의 7년에 걸친 협상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긴 기간의 협상을 요했던 것은 유럽경제공동체에 농업부문을 포함시킬 것 이냐의 여부에 대해 각국간에 침례한 의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농업구조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많은 농산물 수입에 의존해온 서독은 농업부문을 유럽경제공동체에 포함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역내에서 농업부문의 상대적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을 제외한 유럽경제공동체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기 때문이었다.

결국 정치 및 비농업부문에서의 유럽시장 통합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서독으로서는 한결음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고, 농업의 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실시방법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둔채 일반적인 원칙에만 합의하여 로마조약 제 38-46조에 공동농업정책의 골격을 담게되었다.

공동농업정책의 목표은 로마조약 제 39조에 나타나 있는데, ① 기술향상과 농업분야의 합리적 개발 및 생산요소의 최적이용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② 농민의 소득향상을 통한 적정한 농민의 생활수준 확보, 그리고 ③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과 적정한 소비자 가격유지를 통한 농산물시장의 안정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는 식량안보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고,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해소시켜 농촌개발과 농촌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해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과의 농업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다분히 보호주의적 성격을 짙게 담고 있다.

## 3. 共同農業政策 運用體系의 形成 過程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럽경제공동체는 1957년 3월 25일에 로마조약이 체결되고 1958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발족이 되었지만 각 회원국의 기존 농업정책과 EC 공동

농업정책을 복합적으로 적용시키면서 운용한 시험기간을 거치는 동안 구체적인 운용체계의 골격을 갖추기까지는 각국의 이해상충을 조정하기 위한 많은 협의과정을 필요로 했다.

1958년 7월의 Stresa 회의에서는 농산물 생산 및 가격정책 방향을 설정하였고, 1960년 12월의 농업이사회에서는 역내시장 및 가격지지 추진방향과 역외로부터의 농산물 시장 보호방안 등에 합의하였으며, 1962년 4월의 농업이사회에서는 공동농업정책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AGGF: European Agricultural Guidance and Guarantee Fund)의 설치에 합의하였고, 회원국간의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금융보상계정(MCAs: Monetary Compensatory Accounts)을 설치하였다. 그 이후 공동농업정책이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시작한 1968년 7월 1일까지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체계에 대한 기본골격을 다듬어 나갔다.

이 과정에서 농업보호정책을 가장 강력하게 추진해온 서독의 기존 농업정책이 기본골격 형성에 가장 크게 반영되어 가격지지정책과 역외에 대한 강력한 보호정책이 근간을 이루게 되었다.

이 기간동안 각 회원국은 농업구조개선이나 농촌사회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하면서 공동농업정책의 본격가동을 위한 준비를 차실히 진행시켰던 것이다.

#### 4. 共同農業政策 運用의 基本原則과 施行體系

##### (1) 運用基本原則

공동농업정책 운용의 기본원칙은 단일시장(Single Market), 역내농산물우선(Community Preference) 및 공동재정부담(Common Financial Responsibility)이라는 3가지 원칙으로 집약될 수 있다.

단일시장의 원칙은 회원국간에 관세, 보조금 그리고 동식물 검역에 있어서의 차별을 비롯한 모든 행정적 교역제한을 철폐하여 역내농산물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공동품질기준을 적용시켜 공동가격을 형성하도록 하며, 각국의 환율변경으로 인한 가격차를 해소시키기 위해 회원국간의 환율안정을 위한 제도로 금융보상계정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역내농산물 우선의 원칙은 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확보를 위해 개입가격제도나 수출보조금제도 등을 통한 농산물 가격지지제도를 실시하며, 저렴한 역외 농산물의 유입이나 국제농산물 가격의 변동으로 인한 역내 농업과 농민의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 가변부과금(Variable Levies)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재정부담의 원칙은 단일시장이나 역내생산물 우선원칙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예산은 연대재정제도에 입각한 회원국의 부담금, 과다생산추징금, 관세, 농산물 수입부과금 등으로 충당하며, 가격보장부문과 지도부문으로 나누어서 운영되지만 가격보장부

문의 예산이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표 13〉 참조).

## (2) 共同農業政策 施行體系

### 1) 基本體系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단일시장의 형성, 역내농산물 우선, 및 공동재정부담의 3대원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입한 시행체계는 품목에 따라 개입방법이 다르고, EC 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행정 조직이 국가마다 달라서 매우 복잡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격지지를 위한 가격 및 생산보조와 수출보조금제도, 그리고 역외로부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가변부과금제도가 공동농업정책의 기본골격을 형성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가격지지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개입방법이 다르고, 역외로부터의 농업보호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농업정책의 시행체계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곡물(소맥, 보리, 옥수수, 수수, 귀리, 호밀 등)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소개를 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듯이 농산물 가격정책은 농가의 생산비를 보상할 수 있는 농민수취하한가격으로 개입가격(Intervention Price)<sup>1</sup>을 정해 시장가격이 개입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공공수매기관이 시장에 개입하여 수매하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EC 역내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차분가능성과 생산농민의 소득보장을 감안하여 가격안정대의 상한가격인 목표가격(Target Price)<sup>2</sup>을 설정하여 시장가격이 가능한 한 이 수준에 접근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역외로부터의 역내 농업보호를 위해 목표가격을 기초로 예상되는 하역 및 수송비용을 참작하여 문전가격(Threshold Price)<sup>3</sup>을 설정하고, 문전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만큼을 가변부과금(Variable Levies)으로 부과해 수입농산물의 역내가격이 역내에서 형성되는 시장가격을 교란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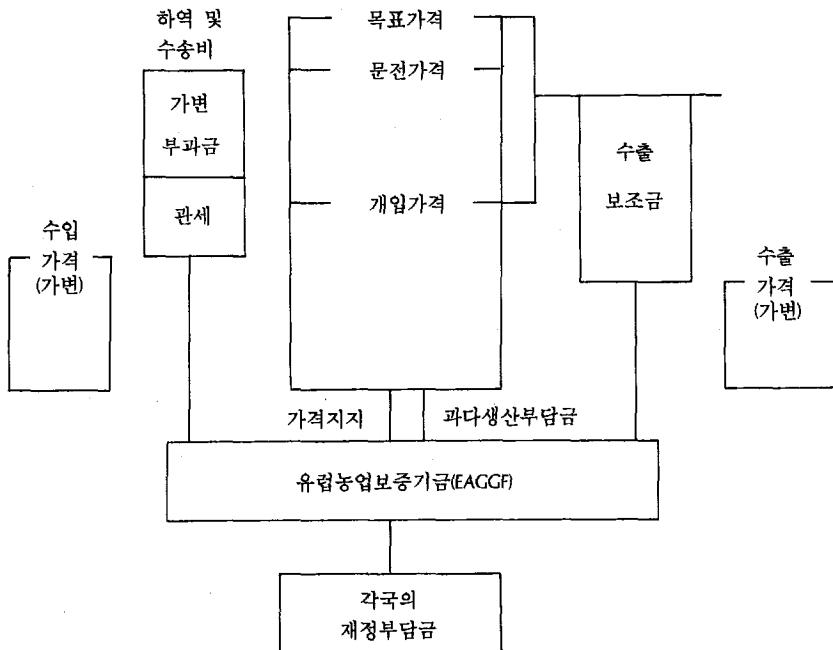
EC의 시장가격이 목표가격을 상회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비축농산물을 방출하여 조정하고, 비축농산물의 방출만으로는 가격조정에 실패하여 시장가격이 목표가격보다 올라갈 경우에는 수입농산물이 들어와 역내 농산물가격은 자동적으로 목표가격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아울러 농산물 가격이 개입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으로 농민이 원하는 전량을 수매함으로써 개입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이와 같은 가격운영체계는 역내 농산물가격이 개입가격을 하한선으로

<sup>1</sup> 두류, 면화 등에 대해서는 최소가격(minimum price)이 적용됨.

<sup>2</sup> 비슷한 개념으로 쇠고기와 포도주에 대해서는 지도가격(guide price), 담배에 대해서는 기준가격(norm price), 그리고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기본가격(basic price)이 적용됨.

<sup>3</sup> 문전가격은 경제가격이라고도 하며 목표가격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적용되는 품목이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돼지고기, 계란, 가금육에 대해서는 입문가격(sluice-gate price)이 그리고 과채류, 포도주 등에 대해서는 창조가격(reference price)이 적용되고 있음.

(그림 1) 공동농업정책 시행체계의 골격



그리고 목표가격을 상한선으로 하는 가격안정대가 철저히 형성될 수 있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한편 과잉농산물의 역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EC시장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액을 수출환불금(Export Refunds)이라는 명목의 수출보조금으로 수출업자에게 지원하는 철저한 보호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 2) 市場介入 形態

EC가 농산물 시장에 개입하는 형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품목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시장개입과 무역제한을 실시하는 품목은 곡물, 버터, 탈지분유, 쇠고기 등으로 이들이 총농업생산의 70% 이상을 점하고 있다. 시장개입은 않고 무역제한만 실시하는 품목은 주로 경지면적의 협소가 큰 제약요인이 될 수 없는 달걀, 가금육, 포도주, 화훼류, 과채류 등으로 총농업생산의 약 25%를 점하고 있다. 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만큼을 가공공장에 보상해 주는 가격보상정책의 대상품목은 유채, 헤바라기씨, 목화씨, 콩 등이 여기에 속한다. 마지막으로 특정지역의 일부 농민에게만 중요한 지역 특산물에 대해 실시하는 정액보상제도(flat-rate aids)의 대상품목은 아마, 호프, 대마, 생사 등이다.

시장개입방법은 시장가격이 개입가격 이하로 떨어져 농민이 수매할 것을 원할 때는

원하는 전량을 연중 수매하는 의무수매와 시장가격하락이 예상될 때 이를 막기위해 수매하는 특별수매 등의 수매를 통한 개입제도가 있다. 또한 수매기관의 보관능력이 초과되거나 당해년도의 예산부족으로 수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관보조금(Storage Premium)이나 이월보조금(Carryover Payments)을 지급하며, 드럼(Drum)소매과 같은 특수농산물의 생산장려를 위한 생산장려보조금, EC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대해 손해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생산환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역외로부터의 역내 농업보호를 위한 가변부과금제도 그리고 과잉농산물의 처분을 위한 수출환불금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곡물의 경우에는 수출입은 매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 허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무수매, 수입부과금 및 수출환불금은 곡물, 설탕, 낙농제품, 쇠고기, 양고기, 신선과채류, 일부 과실가공품, 포도주 등의 대부분 농산물에 적용하고 있지만, 보관보조금 지급은 설탕, 신선과채류, 과실 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직접소득보조는 곡물, 낙농제품, 쇠고기, 양고기, 과채류 등에만 이루어지고 있고, 설탕과 우유에 대해서는 생산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곡물, 설탕, 낙농제품 등에 대해 공동책임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곡물, 일부 과일 가공품, 대두를 제외한 두류에 대해서는 가격보장한도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 3) 支持價格 및 可變賦課金 決定 節次

곡물의 경우 매년 1-2월에 EC 집행위원회는 당해년도의 품목별 목표가격, 개입가격 및 가격보장최대한도량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안을 마련하고, 상주대표부 대표, 집행위원회의, 113위원회 등의 의견조정을 거쳐 농업이사회에 제출하면, 이사회의 의장은 농민단체와 소비자단체등과 협의하고 각회원국 각료들간의 의견조정을 거쳐 3월말까지 법규형식으로 농산물 가격을 확정한다. 다만 세출예산한도를 증액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무 및 농업 연석이사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품목별 가변부과금의 단위당 부과액은 매일 EC 집행위원회에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쇠고기의 경우에는 매월 1회씩 고시하고, 수출환불 기준액은 세계시장의 수급균형이나 EC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고시한다.

## IV. 共同農業政策의 成果와 問題點 擡頭

### 1. 共同農業政策의 成果

EC 역내농산물의 가격지지와 역외로부터의 농업보호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온 공동농업정책이 실시된 후 EC농업은 주요 식품에 대한 안정적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고, 농업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의 활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1950년대 이전의 만성적인 식량부족 현상이 1960년대부터는 점감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에는 주종 농산물은 거의 자급달성이 가능하였으며 일부품목은 순수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되었다. 더구나 1980년대에 와서는 <표 14>에서 보듯이 대부분의 주요 농산물이 과잉상태로 접어들어 농산물 재고가 쌓여 나가고, 이를 처분하기 위한 수출환불금 등의 제도적 장치에 힘입어 세계 농산물시장 수출점유율을 크게 늘여왔다. 1987년의 경우 대두와 옥수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종 농산물에서 순수출국으로 전환되는 성과를 올렸다(<표 12> 참조).

&lt;표 14&gt; 주요농산물 자급률 추이

단위 : %

구 분	1963	1973	1983	1989
곡 물	86	91	118	113
소 맥	94	104	129	124
쇠고기	95	96	108	104
버 터	92	98	134	-
설 탕	82	100	101	124

자료: EC집행위원회 통계국.

뿐만 아니라 농업보호정책에 힘입어 농업자원을 보다 집약적으로 이용하게 되고, 가격지지정책에 힘입어 영농의 규모화가 착실히 진행되는 등 농업구조도 크게 향상되었다(<표 3> 참조).

## 2. 問題點의 摘頭

공동농업정책의 추진으로 EC의 주종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농산물의 생산과잉과 재고누적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켰다.

무엇보다도 생산과잉으로 인한 재고누적은 <표 15>에서 보듯이 1980년대 초반부터 쌓이기 시작하여 1980년대 중반에는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 이후 공동농업정책의 방향전환을 모색한 제1차 개혁을 시도한 결과 다소 낮아지는 듯 했으나 최근에 다시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로 인해 1989년과 1990년의 농산물 재고관리 비용만 하더라도 각각 43억ECU, 53억ECU에 달하였으며, 이는 EAGGF 예산의 16% 및 19%를 각각 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식량재고의 누증은 재고관리 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수입 수요를 크게 줄어들게 함으로써 <표 16>에서 보듯이 가변부과금이나 관세등의 EC 세입 자원을 축소시켰으며, 이를 처분하기 위한 수출보조금을 1980년의 5,695백만 ECU에서 1985년에는 6,993백만 ECU로 그리고 1990년에는 9,351백만 ECU로 급속히 증가시켜 EC

〈표 15〉 연도별 EC 주요 농산물 연말재고 현황

단위 : 천 M/T

분 류	1986	1987	1988	1989	1990
곡 물 류	18,502	10,513	9,939	8,609	11,795
- 소맥(Drum 포함)	11,199	6,142	5,940	3,511	6,137
- 보 리	5,296	3,586	3,067	2,990	3,320
울리브유	n.a.	311	349	131	n.a.
쇠 고 기	n.a.	754	583	158	n.a.
낙농제품	1,632	1,482	111	26	n.a.
- 탈지분유	772	584	10	22	n.a.
- 버 터	860	888	101	5	n.a.
주 정(천 hl)	n.a.	1,688	3,308	3,568	n.a.

주: 1986년과 1990년 자료는 시장년도, 그리고 196,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39,

〈표 16〉 EAGGF 지출액과 CAP 수입

단위 : 백만 ECU

구 분	1982	1985	1988	1990
EC 예산 전체	20,706	28,100	41,121	46,717
EAGGF 지출	13,056	20,464	28,830	29,742
CAP 수입	2,228	2,179	2,895	2,537

자료: EC집행위원회 통계국, Finanzberichte über den EAGFL, 각년도.

재정에 커다란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표 17〉 참조). 그 결과 EC 집행위원회 내부에서도 농업보호를 위한 지출감축 요구가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EC 재정지출의 60% 이상을 농업부문에 투하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농업소득은 크게 증가하지 못하였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농산물의 구조적 과잉문제가 심화되면서부터 농가판매가격이 실질가격으로는 정체 내지 하락함에 따라 생산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었다. 더구나 가격정책 위주의 공동농업정책으로 말미암아 상위 20%에 해당하는 대농이 농업부문에 투하되는 예산의 80%를 수혜받는 결과를 낳아 농업부문내에서의 소득불균형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1973년 1월에 영국, 덴마크 및 에이레가, 1987년 1월에는 그리스가, 그리고 1986년 1월에는 스페인 및 포르투갈이 EC에 가담하고, 1990년 10월에는 통독에 따라 과거 동독지역까지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회원국간에 경영규모를 비롯한 농업구조가 크게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같은 국가내에서도 대농과 소농이 혼재하고 있고, 지역간에 농업구조의 차이가 큰 설정이어서 공동농업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가격정책만으로는 회원국간, 지역간 또는 농가간의 생산구조 차이에 따른 수혜의 정도가 달라 지역에 대한 균형개발 문제와 재정부담금의 적정배분 등이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

였다. 아울러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EC가입과 동독지역의 편입으로 인한 농업기반 취약 지역의 확대로 공동농업정책 적용에 따른 추가비용의 발생과 소비자 단체들의 농업보호 완화, 농산물가격 인하, 농산물품질 향상 그리고 환경훼손의 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에 바탕을 둔 공동농업정책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강요하고 있다.

한편 EC 농산물의 과잉재고를 처분하기 위한 수출보조금이 증대하고, 세계농산물 시장의 EC점유율이 증가됨에 따라 미국, 호주, 아르헨틴, 카나다 등의 농산물 수출국과 빈번한 마찰이 생기고, 특히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이 진행되면서 EC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격보조금, 가변부과금, 수출 보조금 등이 공격을 받게 되고, 동구권 국가는 물론이고 설탕이나 열대과실류를 생산하는 열대상품 국가들도 자국농산물의 수입을 늘려 달라는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17〉 EAGGF/가격보장부문 운영내역

단위 : 백만 ECU

	1985			1990(P)		
	계	수출보조	가격, 생산 등 보조	계	수출보조	가격, 생산 등 보조
Cereals	2,310.2 (11.8)	1,076.9	1,233.5	4,505 (17.3)	2,961	1,544
쌀	50.1	36.6	13.5	106	86	20
설    탕	1,804.5 (9.2)	1,352.8	451.7	2,127 (8.2)	1,483	644
우유제품	5,933.2 (30.4)	2,028.2	3,905.0	4,489 (17.2)	2,401	2,088
쇠    고    기	2,745.8	1,338.6	1,407.2	2,187 (8.4)	977	1,210
식    물    성	1,110.6 (5.7)	3.4	1,107.1	3,422 (13.1)	29	3,393
유    지    류						
과실,채소	1,230.7	74.5	1,156.2	1,296	105	1,191
포    도    주	921.4	18.9	902.5	1,389	62	1,327
기    타						
농    산    물	2,726.8	492.0	2,234.8	4,784	883	3,901
기    타						
축    산    물	667.8	571.3	96.5	1,756	364	1,392
수    산    물	16.1	△ 0.1	47.0	32	-	32
소    계	19,517.2 (100.0)	6,992.9 (35.8)	12,524.3 (64.2)	26,093 (100.0)	9,351 (35.8)	16,742 (64.2)
기    타	227.0	-	227.0	1,931	-	1,931
총    계	19,744.2	6,992.9	12,751.3	28,024	9,373	18,651

자료: EC집행위원회 통계국, Finanzberichte über den EAGFL, 각년도

## V. EC 農政改革의 方向과 展望

가격지지정책에 바탕을 둔 공동농업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산물가격정책과 더불어 농업구조개선에도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서 1972년에는 농장현대화계획을 보조하고, 이농자에 대한 조기연금제 및 기술교육 그리고 영농후계자에 대한 교육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Mansholt계획이 수립되었고, 아울러 유통시설의 현대화, 소비자에 대한 농산물 직공급체계 및 농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농산물유통 및 가공산업지원 사업이 도입되었다.

1979년에는 우유에 대해 과잉생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책임과정금 제도를 도입하였고, 농업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농촌개발을 위해 열악지에 대한 농업기반조성, 식품가공공장을 비롯한 소규모기업의 유치, 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열악지 농촌종합개발계획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책들은 EC 농업정책의 기본골격을 바꾸기보다는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도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공동농업정책의 보호주의 색채를 후퇴시키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 움직임은 1985년의 제1차 개혁안이 제출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초에 세계적으로 곡물재고가 증가하면서 국제농산물가격이 하락하게 되었고, EC에서도 낙농제품, 육류, 소맥 등의 재고가 증가하여 이를 처분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 결과 EC는 재정압박으로 수출보조금 지급을 비롯한 가격지지정책의 계속적인 유지를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1985년초에 EC집행위원회는 EC 농산물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재정부담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게 되었고, 약 3년간의 협의를 거쳐 1988년 2월에 농업부문지출을 억제시키고, 과잉생산품목의 생산조절을 실시한다는 내용의 농산물 가격지지의 후퇴를 의미하는 제1차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억제시키기 위해 곡물, 유채류, 대두를 제외한 두류 등에 대해 가격보장한도량을 설정하는 동시에 유럽농업보증기금 가운데 가격보장부문의 증가율을 EC의 GNP 성장율의 74% 이내로 제한하고, 가격보장한도량 이상 생산된 경우에는 생산농민에게 추가로 공동책임부과금을 추징하며, 수매가격은 점차 인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과잉생산품목의 생산조절을 위해 기존의 설탕 이외에 우유에 대해서도 생산쿼터제를 실시하고, 농지휴경화계획, 농지의 조방이용, 또는 생산과잉품목의 작목전환시에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며, 아울러 은퇴농민에 대한 조기연금지급과 방기농지의 관리를 위한 제도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농업지출한도를 억제하고 가격보장부문의 지출증가율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공동농업정책의 구조적인 문제의 해결책으로서는 미흡한 조치여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1990년 이후에는 다시 재고가 쌓여 나가게 되었고, 1991년의 농업지출도 전년대비 20% 이상이나 증가되었다. 생산역제정책도 휴경화 실적은 총 경작면적의 3%에 해당하는 80만 ha에 달했으나 생산성이 낮은 농지만 신고되었기 때문에 생

산역제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조방화나 조기연금제의 이행실적은 거의 없을 정도로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와 같이 EC 공동농업정책이 발족된지 30여년만에 시도한 제1차 개혁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되자 1990년 10월에는 제2차 개혁안이 등장하여 현재 논의과정에 있다.

이 개혁안은 이제까지의 가격정책을 근간으로 한 농업정책이 대외적인 국제경쟁력 확보에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도 못하면서 대내적으로는 과잉생산과 계층간 소득불균형을 촉진시킨다는 인식에서 농업정책에 직접소득보조를 비롯한 사회정책적인 요소를 도입하여, 농촌지역에 적정한 수준의 가족농을 유지시켜 농민들이 자연환경보전과 지역개발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지가격을 대폭 인하함으로서 생산자가 국제 경쟁력에 적응해 나가도록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곡물을 비롯한 생산과잉품목의 지지가격을 국제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고, 이러한 곡물가격 인하를 육류의 가격조정에도 연결시키며, 우유 생산쿼터를 더욱 축소하고, 휴경, 조방농업 이행자에 대한 소득보조금이나 은퇴농민에 대한 연금지급액을 실질적인 생산감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상시켜 나가는 한편, 제1차 개혁에 의해 도입된 공동체임부과금제나 농업지출한도제는 폐지하는 새로운 생산 및 재정지출 억제방안을 모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중소농의 소득보조를 확대시키기 위해 생산량에 비례하는 보조금 수혜방식을 지양하고, 영농규모와 지역에 따라 차등지급하여 일정 규모이하의 농가나 영농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소득상실액은 전액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제도를 조정하며, 자연경관과 농촌사회의 특성을 보전하려는 농민의 노력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자연환경보전 및 농촌개발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간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혁안에 대해 국내외적인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회원국간에 농업구조의 차이로 인한 이해가 상반되어 있고, 소비자단체나 생산자단체간의 입장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EC의 정책결정과정이 12개 회원국간의 협상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EC 공동농업정책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등 개혁안은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설사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상당한 협상기간을 요할 것으로 보인다.

## VI. EC 農政의 敎訓

EC 공동농업정책은 그 동안의 추진과정에서 식량의 안정적 확보라는 큰 성과를 거두었으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가간, 지역간, 농가간의 균형발전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농산물의 재고누증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재정압박으로 원활한 정책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농업보호정책에 대한 국제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등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농정에 던져주는 의미는 사

못 크다고 하겠다.

첫째, 국민식량의 안정공급을 위한 식량자급율의 제고는 농정의 선택에 의해 크게 지배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농업보호정책의 추진은 만성적인 식량수입국을 불과 20-30년만에 순수출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EC의 예를 터득하여 현재의 농업여건을 토대로 제기되는 농업포기론은 불식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둘째, 식량의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고, 자연경관이나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농업은 기필코 유지시켜야 한다는 농업보호에 관한 정책의지를 어떠한 대내외적인 도전에도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한결같이 유지시키고 있다는 점을 배워야 할 것이다.

세째, 정책의 수립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농민들이 이에 대처하여 조정해 나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도 본받을 만하다고 본다.

네째,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은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는 하지만 일단 생산과잉단계에 접어들면 소비자저항과 재정압박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이 정책이 지역간, 농가간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소득보조를 비롯한 과감한 사회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EC가 최근에 농산물 가격지지정책을 일부 후퇴시키려는 움직임은 대부분의 주종 농산물을 자급하고 재고가 쌓여 나가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식량자급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영세소농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획기적인 구조개선대책이 동시에 추진되지 않고서는 농산물 가격지지정책만으로 농업구조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가격정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의 부분적인 구조개선대책만으로는 기대하는 구조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EC의 농정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봉순

1992 “EC 공동농업정책(CAP)의 흐름과 한국농정에 주는 교훈”, 농어촌사회연구소 『농민과사회』, 제4호 (봄), 서울:한길사.

#### 강봉순

1983 『주요국가의 농업정책 비교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63.

1983 『서독의 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71호.

#### 김경량

1991 “EC의 농업구조정책”, 『한국농업의 위기와 재편방향』, 서울:농어촌사회연구소, pp. 226-245.

## 주 EC 대표부

1991 『EC 농업정책동향』, 설명자료

최세균, 권오복

1991 『세계 농산물 교역질서 변화와 한국농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3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6 『EEC 공동농업정책의 방향전환모색』, 해외농업자료 37.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y

1988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An Area Without Internal Frontiers*, The Progress Report Required by Article 813 of the Treaty, Com(88) 650.

1989 *A Common Agricultural Policy for the 1990s*,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 of the Communities

1990 *The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Community*.

1991 *Agricultural Situation in the Community*.

1991 *CAP Reform: NEW Commission Proposals Single Major Shift in Farm Policy*.  
EC, Eurostat, yearly.

Emerson, M. et al.

1988 *European Economy*, Belgium.

Manegold

1989 "EC Agricultural Policy 1988-89", *Review of Marketing and Agricultural Economics*, Vol. 57, No. 1-3, pp. 11-46.

March, John S.

1990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Juliet Lodge,ed.,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Challenge of the Future*, St. Martins Press.

Rosenblatt Julis, et al.

1988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of the European Community - Principles and Consequences*, IMF Occational Paper No. 62.

Swinbank Alan

1990 "Implications of 1992 for EEC Farm and Food Policies", *Food Policy*, Vol. 15, No. 2, pp. 102-110

Tanner, C. and A. Swinbank

1987 "Prospects for Reform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Food Policy*, Vol. 12, No. 4, pp. 290-294.

Veer, Jan le

1989 "Perspectives for the CAP", *European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Vol. 14, pp. 1-10.

## EC Agriculture and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Bong-Soon Kang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situation of EC agriculture by summarizing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agricultural structure, demand for and suppl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gricultural trade. A related objective of the paper includes reviewing the history of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which has been influencing the EC agriculture substantially.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CAP, based on the price support policy, has been very successful in achieving a system of stable supply of basic foods and in establishing a sound agricultural infrastructure. Nevertheless, there are remaining problems such as a more equitable development of agriculture in terms of countries, regions, and farms. A transformation of the direction of the CAP is discussed since there is a tight budget by the accumulation of surplus storage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an international pressure on its highly protective agricultural policy.

This paper is organized as follows: First, the formation procedure and contents of the CAP are introduced; second, the performance and emerging problems of the CAP are summarized; third, the movements toward reforming the CAP are reviewed. In addition, some implications are drawn from the experience of EC agriculture on the Korean agricultural policy, which is being reshaped.

강봉순,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